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지원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중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울주군

내 용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, 제34조의2 및 보건복지부 「보육사업안내」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, 어린이 집이나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동일 아동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영유아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이와 관련하여 정부합동 감사기간(2018. 2. 26. ~ 3. 16.) 중 울산광역시의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동일 아동 중복지원 여부와 중복지원자에 대한 환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, 아래 [표]와 같이 중복 지원된 58건 6,408,130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.

[표]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현황

<단위 : 건, 원>

자치구	총 계		보육료		양육수당	
계	58	6,408,130	35	3,308,130	23	3,100,000
중구	18	2,032,430	10	882,430	8	1,150,000
남구	27	3,072,640	17	1,772,640	10	1,300,000
동구	1	100,000	-	-	1	100,000
북구	8	870,360	5	420,360	3	450,000
울주군	4	332,700	3	232,700	1	100,000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882,430원, 양육수당 1,150,00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남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1,772,640원, 양육수당 1,300,00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동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양육수당 100,00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북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420,360원, 양육수당 450,00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울주군수는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232,700원, 양육수당 100,00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